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637

발의연월일: 2020. 7. 8.

발 의 자: 박홍근 · 권칠승 · 이상직

김원이 · 김수흥 · 임호선

안규백 • 야전비 • 강선우

조정식 · 백혜련 · 이용우

이형석 • 유미향 • 김주영

의원(15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항공기 내의 보안을 위해 운항 중인 항공기 내에서 승객의 흡연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여 기내흡연행위를 할 경우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기장 등 항공종사자의 흡연실태에 대한 지적이 나오는 상황에서 현행법상 항공종사자나 승무원에 대한 규정이 미비하여 기내에서 흡연한 기장 등에 대한 법적 제재가 불가능함. 항공종사자나 승무원의 기내 흡연은 승객의 건강 문제는물론이고, 항공기 안전과 직결되기 때문에 반드시 금지되어야 하는바,항공종사자 등의 흡연 행위를 제한하고 흡연 행위 등에 대한 제재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 기내 금연 의무 위반 시 항공종사자 및 객실승무원의 자격정지 또는 벌칙 조항을 신설함(안 제43조제1항제15호의2, 제153조의2 신설).
- 나. 항공종사자 및 객실승무원의 기내 흡연을 금지하고 항공운송사업 자의 기내 흡연 관리·감독 의무를 신설함(안 제57조의2 신설).
- 다. 소속 항공종사자 및 객실승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기내 흡연 관리·감독을 하지 아니한 경우 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조항 을 신설함(안 제166조제1항제2호의2 신설).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1항에 제1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의2. 제57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항공기 내에서 흡연을 한 경우 제5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7조의2(항공기 내 흡연 금지) ① 항공종사자 및 객실승무원은 항공기 내에서 흡연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항공운송사업자는 항공종사자 및 객실승무원이 항공기 내에서 흡연을 하지 않도록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제15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3조의2(항공기 내 흡연의 죄) 제57조의2제1항을 위반한 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66조제1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제57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항공기 내 흡연에 대한 관리·감독을 하지 아니하거나 소홀히 한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3조(자격증명·항공신체검사증	제43조(자격증명·항공신체검사증
명의 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	명의 취소 등) ①
장관은 항공종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그 자격증명이나 자격	
증명의 한정(이하 이 조에서	
"자격증명등"이라 한다)을 취소	
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	
하여 자격증명등의 효력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	
는 제3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해당 자격증명등을 취소하	
여야 한다.	
1. ~ 15. (생 략)	1. ~ 15. (현행과 같음)
<u><신 설></u>	<u>15의2. 제57조의2제1항을 위반</u>
	하여 항공기 내에서 흡연을
	<u>한 경우</u>
16. ~ 31. (생 략)	16. ~ 31.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u><신 설></u>	제57조의2(항공기 내 흡연 금지)
	① 항공종사자 및 객실승무원
	은 항공기 내에서 흡연을 하여
	<u>서는 아니 된다.</u>

<신 설>

제16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제166조(과태료) ①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2. (생략) <신 설>

3. ~ 14. (생 략) ② ~ ⑥ (생 략) ② 항공운송사업자는 항공종사 자 및 객실승무원이 항공기 내 에서 흡연을 하지 않도록 관 리·감독하여야 한다.

제153조의2(항공기 내 흡연의 죄) 제57조의2제1항을 위반한 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2. (현행과 같음)

2의2. 제57조의2제2항을 위반하 여 항공기 내 흡연에 대한 관 리·감독을 하지 아니하거나 소홀히 한 자

3. ~ 14. (현행과 같음)

② ~ ⑥ (현행과 같음)